

「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○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4. 11(월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
○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○ 주민들이 각종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○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
조례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안 제3조는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디자인 기준 수립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의 우선적용 범위와 활성화사업
-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

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·홍보·교육·표창에 관한 사항을  
각각 규정 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·관리함으로써  
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 
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 
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 
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주민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재산(이하 “주민안전”이라 한다)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(이하 “건축물 등”이라 한다)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·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기준(이하 “디자인기준”이라 한다)”이란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”이란 군이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평창군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본원칙)**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.

2. 출입구, 울타리,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.
3.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.
4.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, 공원,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.
5. 지속적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**제4조(책무)**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·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「경관법」에 따른 평창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1. 목표와 방향
2. 제8조에 따른 활성화사업
3.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

시행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주민안전 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디자인기준의 수립 등)**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**제7조(우선적용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
2.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할 수 있다.

**제8조(활성화사업)**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(이하 “활성화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
2. 시범사업
3. 인증시스템 구축사업
4.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** 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
2. 디자인기준의 수립·변경 및 적용
3.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
4. 제도개선
5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평창군 경관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.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, 평창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.

**제11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2조(교육 및 홍보)** ① 군수는 공공기관,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·단체, 법인·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**제13조(표창)**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, 법인·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